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환경자원화시설 주소 정비(안 제2조)

나.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안 제6조)

· 당초 :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 변경 :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다.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치법규 인용 조항 변경(안 제13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백현리 산177-1번지 일원으로”를 “송백로 499로”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최종처리시설”을 “최종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7호가목”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3항”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으로, “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단체에게”를 “관련 단체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단 될 때”를 “판단될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 할”을 “처리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로 한다.

제17조 중 “폐촉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으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폐촉법 제25조의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로

한다.

제2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 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 필요----- -----.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생략) ② 환경자원화시설의 위치는 구 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77-1번 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송백로 499로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	제3조(정의) ----- -----.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

호에 따른 폐기물의 <u>최종처리 시설</u>을 말한다.	----- <u>최종처분 시설</u>-----.
3. “재활용시설”이란 <u>법 제2조제 7호</u>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 · 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3. ----- <u>법 제2조제 7호가목</u>----- ----- ----- -----.
4. “주민편익시설”이란 <u>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u>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u>시장</u>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영 제35조제3항</u>에 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 ----- ----- <u>폐기물시설촉진법</u> 시

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각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생략)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생략)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행령 제35조제3항-- 환경자원
화시설의 관리·운영-----
-----.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
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 폐기물처리시설---

-

3. (현행과 같음)

② -----

관련 단체에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

-- 경우에는 -----
-----.

1. (현행과 같음)

2. -----
---- 위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
판단될 경우

5. (생 략)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압축 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생 략)

제1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제17조 (주변지역 지원 등) 시장은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환경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시장이 폐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

5. (현행과 같음)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 가연성 폐기물-----
-----.

② ----- 처리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주변지역 지원 등) -----
- 폐기물시설촉진법 -----
----- 별표 3-----

-----.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

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 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 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제23조(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u> <u>에</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생략

2. 생략

③ ~ ⑦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다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

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 7. 생략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이 재 균
	담 당 자	위 상 열 (480-5242)